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연기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개정 2017. 05. 04

개정 2018. 07. 0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및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교육·훈련 기준 고시”라 함) 제7조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연기하는 경우의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기를 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별표 3 제2호 가목3)에 따라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 영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로서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특급기술자 계속교육)
2. 영 별표 3 제2호 나목3)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교육·훈련(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3. 영 별표 3 제2호 나목4)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교육·훈련(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
4. 영 별표 3 제2호 다목3)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교육·훈련(품질관리 계속교육)

5. 영 별표 3 제2호 가목1) 및 다목1)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영(시행 2014.5.23.) 부칙 제10조제2항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시행 2015.6.30.) 부칙 제 1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기가 유예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최초교육)

제3조(연기사유)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질병, 입대, 해외 출장 및 연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이외에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출산 및 육아
2. 결혼
3.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4. 교육 인프라 부족
5. 기타

제4조(제출서류 등)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 연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연기사유 해당기간 및 연기횟수 등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2017.05.04.>

이 기준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7.03.>

이 기준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훈련 연기신청 제출서류 및 연기사유 해당기간 · 횟수

구분	연기사유	제출서류	연기사유 해당기간	비고
건설기술자	질병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 진단서 또는 산재관련서류 ※ 산재관련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 요양연기·기타신청서(의료기관에서 확인한 진료소견 내용포함)	- 진단서 · 치료기간이 표기된 경우 : 치료기간까지 · 치료기간이 없는 경우 : 장기치료 및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르므로 진단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 산재 : 첨부서류의 기간까지	사유 발생시 마다 ※ 당뇨병, 고혈압 등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동일질병으로 반복 신청하는 경우 3회까지만 인정
	입대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 입영확인서류 - 복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 - 산업/전문요원복무확인서(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등)	- 복무기간	
	해외출장 및 연수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 서류 - 해외출장 :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또는 여권 등 - 연수 : 입학허가서 등(한국어 번역공증 첨부) * 업체신고시 : 공문, 신청서, 명단, 해외출장 및 연수증빙서류(해외출장 : 인사명령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연수 : 입학허가서 / 한국어 번역공증 첨부)	- 해당기간 만료일까지 - 해당기간 만료일을 알 수 없는 경우 : 제출서류 발행일(여권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6개월	사유 발생시 마다
	법령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교정기관(교도소), 구치 감호소 등>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 입증서류	- 해당기간 만료일까지	사유 발생시 마다

구분	연기사유	제출서류	연기사유 해당기간	비고
건설 기술 자	출산 및 육아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 입증서류 - 출산 :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포함) 등 - 육아관련 : 육아휴직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등	- 출산 : 출산예정일까지 - 육아관련 : 휴직기간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 제 19조 근거)	사유 발생시 마다
	결혼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 청첩장	결혼일로부터 7일	사유 발생시 마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 사망진단서	사망일로부터 2개월	사유 발생시 마다
	교육 인프라 부족	국토교통부의 지침문서 또는 협의 결과 문서	국토교통부의 지침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함	
	기타(수탁기관이 인정한 경우)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2. 수탁기관이 요구하는 입증서류(발주청확인서 등)	사안별로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	